

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동의서

본 건물(업소)에 설치된 아래의 불법옥외광고물은 광고주 또는 건축주가 직접 정비하여야 하나 사정상 직접 정비가 어렵기에 귀 구청에서 대신 철거 및 철거한 간판에 대하여 반환을 포기하며 본 간판을 폐기처분하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소재지	상호	종류	설치층	광고내용	비고

※ 종류 : 가로형간판, 세로형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, 지주이용간판, 기타

2015 년 월 일

상 호 :

전 화 번 호 :

광고주(건축주) : (인)

동작구청장 귀하

동작구 노량진로74(대방동) 유한양행 빌딩 3층 도시계획과 FAX/820-9798 : TEL/820-1138, 한의교